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6.4.26(화) 17:30

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성일

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황규철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6년 4월 18일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4월 19일

3. 제안 이유

- 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시행(안 제3조)
- 나. 곤충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- 다.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화를 위한 지원(안 제6조, 안 제7조)
- 라. 곤충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'은 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도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함.